

공 고

●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18-4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(이의제기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원* 등 13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 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 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행정처분 대상자

번호	대상자	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주식회사 원*	110111-6*****	서울시 서초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**2-0931	태양광
2	주식회사 뉴*리션	110111-6*****	서울시 강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-04-0361	주식

3	주.원*탁	1101111-6*****	서울시 영등포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-02-0706	주식
4	유한회사 그*랜드스울	110114-0*****	서울시 강동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070-**-46-0087	인터넷
5	양*열	841203-1*****	경기도 고양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2-**-91-8302	교육
6	주여*도자 산관리본부	110111-5*****	서울시 영등포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9,000,000	02-**-90-8817	교육
7	박*익	930115-1*****	인천광역시 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**77-0055	꽃
8	이*재	590206-1*****	경기도 파주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-14-2214	인터넷
9	주식회사 골*브릿 지자산	110111-5*****	서울시 노원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070-**-52-1838	주식
10	주식회사 미*이코 노믹	110111-5*****	서울시 영등포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,750,000	02-**-2-8791	교육
11	한*희	781212-2*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10-**-88-7944	부동산
12	주식회사 엠*이씨 대부중개	110111-6*****	서울시 광진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10-**-21-1916	대출
13	브*스	110111-6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br ics-ad.com	광고 대행